

보도	2025.3.28.(금) 조간	배포	2025.3.27.(목)		
담당부서	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	책임자	국 장	유형주	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 장	손기숙	(02-3145-7702)
	회계감리2국 기획감리팀	책임자	국 장	장영심	(02-3145-7290)
		담당자	팀 장	박기현	(02-3145-7292)
	감사인감리국 감사인감리총괄팀	책임자	국 장	김시일	(02-3145-7860)
		담당자	팀 장	정주은	(02-3145-7862)

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·감리업무 운영계획

주요 내용

◆ **금융감독원은 면밀한 회계심사·감리를 통해 회계정보의 투명성·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확립하겠음**

✓ 2025년도 **회계심사·감리업무 기본방향**은 다음과 같음

① 빈틈없는 심사·감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

- **(감리절차 강화)**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확대 및 내부심의절차 강화
- **(상장 전후 감독 강화)** IPO예정기업 및 상장 직후 기업에 대한 심사강화
- **(한계기업 감시 강화)**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심사확대

② 제반 환경·제도 개선을 통한 심사·감리 실효성 제고

- **(시스템화)** 감리 쏠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세대 감리시스템 구축
- **(제재기준 개선)** 다수 회계연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추진
- **(시의성 반영)**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한 '26년 테마심사 항목 선정·발표

③ 감사인 감리·제재방식 개편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

- **(감리방식 개편)** 감사인별 시장영향력 등을 반영하여 감리주기 차등화
- **(조치 합리화)** 등록요건, 수시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치체계 개편 추진
- **(내부통제 감독강화)** 통합관리 점검 지속 및 지배기구 감독강화 방안 검토

✓ 회계심사·감리업무 기본방향에 따라 상장회사 등에 대하여 **재무제표 심사·감리 160사, 10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인 감리** 실시 예정

I. 2025년도 회계심사·감리업무 기본방향

< 기본 방향 >

◆ 회계정보의 투명성·신뢰성 제고로 「선진화된 자본시장」 확립

Vigilant (빈틈없는)	회계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감시기능 강화 등을 통해 빈틈없는 심사·감리 실시
Effective (실효적인)	차세대 감리시스템 구축 및 제재 기준·관행 개선 등을 통한 실효적인 회계감리체계 확립
Advanced (선진화된)	감사인 감리·제재방식 개편 및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회계질서 정립

1 빈틈없는 심사·감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

- ㉠ **(감리절차 강화)**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등 신속한 감리를 실시하고, 중조치건에 대해서는 내부심의절차 강화*
 - * “고의 & 과징금 20억원 이상” 조치시 사전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전문가의견 청취
- 회사·감사인이 자료제출을 거부·방해·기피하는 등의 “회계감리·외부감사 방해 행위”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
- ㉡ **(상장 전후 감독 강화)** IPO예정기업에 대한 심사 확대*를 통해 회계분식 등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차단
 - * (사업보고서 비제출대상) 기존자산 1조원 이상 → 변경5천억원 이상 등
- 상장 직후 주가·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, 기술특례상장기업(기술성을 인정받아 상장한 회사)도 심사대상 포함
- ㉢ **(한계기업 감시 강화)** 한계기업 징후* 기업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고, 상장폐지 회피목적의 분식 적발시 신속한 감리로 조기퇴출 유도
 - *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, 연속적인 영업손실, 계속기업불확실성 등을 종합 분석

2 제반 환경·제도 개선을 통한 심사·감리 실효성 제고

㉠ **(시스템화)** “심사대상 선정 ~ 감리종료” 쉼과정을 시스템 내에서 보다 견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차세대 감리시스템 구축*

* 조사·공시 등 유관시스템과 연계, 양정산정 자동화, 회계검토모형 현행화 등

○ 현장조사시 입수한 전자정보의 유용성을 분석하여 입수자료 범위를 정교화하고, 동 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

㉡ **(제재기준 개선)** 다수 회계연도에 걸친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상향을 추진*하고, 장기 적체건에 대한 별도 처리방안** 마련

* 그간 금융위·증선위 논의시 제기된 불합리한 기준 등 개선(금융위 협의 필요)

** 예) 횡령 등 기소건은 공소장 등을 입수하여 신속 조치 등

㉢ **(의의성 반영)**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한 '26년 테마심사 회계이슈를 선정·발표하고, 旣 선정된 '25년 회계이슈*는 신속히 심사 진행

* ① 수익인식, ② 비시장성 자산평가, ③ 특수관계자 거래,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

3 감사인 감리·제재방식 개편 등 회계감독 선진화

㉠ **(감리방식 개편)** 회계법인별 시장영향력·품질관리수준을 반영하여 정기감리* 주기를 차등화(3~5년)하고, 취약부문 테마점검 강화

* ①품질관리감리, ②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, ③개별감사보고서 감리를 종합 수행

㉡ **(조치 합리화)** 등록요건 및 수시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치체계 개편을 추진*하고, 부서내 심사전담자 지정 등 내부심사 강화

* 그간 금융위·증선위 논의시 제기된 문제점 등 보완(금융위 협의 필요)

㉢ **(내부통제 감독강화)** 중소형 회계법인의 취약부문인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,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여 재발방지 촉구

○ 회계법인의 건전 경영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지배기구 관련 공시확대 등 감독강화 방안 검토

Ⅱ. 2025년도 회계심사·감리 실시대상

◆ 금융감독원은 2025년에 상장법인 등 **160사**에 대한 **재무제표 심사·감리** 및 **회계법인 10사**에 대한 **감사인 감리**를 실시할 예정

※ 인력 현황,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변경 가능

1 재무제표 심사·감리

□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, 감리 운영인력, 과거 업무수행결과,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

○ **160사***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·감리를 실시할 계획

*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·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,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·성격·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○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장 경조치*(주의·경고)로 신속히 종결하고, **경제적·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**에 역량을 집중

*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

□ **중점심사 회계이슈^{*1}, 한계기업 징후^{*2}, 상장예정, 기타 위험요소^{*3}**, 장기 미감리(예, 10년 이상) 등 사유를 **표본심사 대상**으로 선정하고,

*1 ① 수익인식, ② 비시장성 자산평가, ③ 특수관계자 거래,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
☞ '24.6.14. 보도자료 「2024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·업종 사전예고」

*2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, 연속적인 영업손실, 계속기업불확실성 등

*3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, 횡령·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

○ **회계오류수정*, 회계부정 제보**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**혐의심사 대상**으로 선정할 예정

*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 금액을 수정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한 경우
(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23조)

2 감사인 감리*

* 외감규정 제23조 제6항에 따라 품질관리감리와 개별감사보고서 감리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리를 의미

□ 과거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 수검 여부, 감리주기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

○ **총 10개* 회계법인**에 대하여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, 감리대상 선정 후 감리실시 일정** 등을 사전 통보할 예정

* 가군 1사, 나군 5사, 다군 4사

** 회계법인 소속 군(群)별로 3~7주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, 감리인력 현황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

[참고] 감사인 감리 군별 구분

(단위: 사)

구분*	회계법인 수	'25년 계획	실적			
			'22년	'23년	'24년	계
가군	4	1	2	2	2	6
나군	14	5	3	5	4	12
다군	21	4	6	7	7	20
라군	1	-	6	-	1	7
합계	40	10	17	14	14	45

* 회계법인 군 분류는 해당 연도 감리대상 선정 시 기준('25년 계획은 '24.8월말 기준)

□ **효율적인 감리수행**을 위하여 이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**회계법인의 취약부분** 등을 중심으로 점검*할 예정

* (중점 점검항목)

- ① 인사·자금·회계 등에 대한 **실질적인 통합관리체계** 운영 여부
- ② 감사품질에 대응하는 **성과평가 및 보상체계** 구축 여부
- ③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견제장치와 같은 **지배구조 운영 실효성**
- ④ **감사투입시간** 신뢰성 확보를 위한 **관리체계** 구축여부
- ⑤ **비감사용역 제공** 등과 관련하여 **독립성** 준수를 위한 **정책**의 구축·운영 여부

□ **美 PCAOB**(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)와 **국내 회계법인**에 대한 공동검사*시 **긴밀한 공조체제**를 유지

* '07.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'24년말까지 **5개 회계법인**에 대해 **총 26회 공동검사** 실시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